

조지서 사지직의 분석*

A Study on the Official Saji of the Government Paper
Manufactory(Jojiseo) in the Chosun Dynasty

정 선 영 (Jung, Sunyo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3.4 서원 배향 |
| 2. 사지의 직제 설치와 혁파 | 4. 사지의 관력 |
| 3. 사지의 출사로와 재임기간 | 4.1 직전 관직 |
| 3.1 과거 급제 | 4.2 체직후 관직 |
| 3.2 제수 연령 | 5. 결 론 |
| 3.3 재임 기간 | <참고문헌> |

< 초 록 >

본고는 조선시대 제지사업을 관장하는 조지서의 사지에 관한 연구이다. 사지를 역임했던 제수자를 파악하고, 그 제수자 들에 대한 출사로, 재임기간, 관력 등을 분석하여 사지의 존재 시기, 지위, 조지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지는 15세기 중반에 설치되어서 16세기 말까지 존재하였던 중6품 녹관이다.

현재 파악된 사지는 26명으로서, 대부분 문음이나 유일 천거로 제수되었으며, 과거는 대부분 사지 체직 후에 급제하였다. 문과급제자는 총 5명이며, 서원에 배향된 역임자는 9명으로 34%이다.

사지제수 연령은,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35~49세가 6명 그리고 유일로 천거된 60~70대도 6명으로 동일하다. 재임기간은 30개월이 본래의 임기이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 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사지가 철폐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지제수 직전의 관직은 6품의 현감, 현령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참봉이후 바로 승진한 경우가 다음 순이었다. 체직 후 관직도 현령, 현감 등 외관직 수령이 가장 많았으며, 청요직, 당상관도 있었다.

要語: 조지서, 조지서 관직, 사지

* 이 연구는 201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yjung@gwangju.ac.kr)

접수일: 2012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surveys the existing period of Saji and the meaning of Saji(사지) and the Government Paper Manufactory(Jojiseo-조지서) in the official system through finding out the name list of Saji, the way of getting a position of the serving period of Saji and the career history of Saji.

The term Saji first began in the middle of 15th century and existed until 16th century. It was a 6th rank official and a salaried office.

Most of them were selected by the Caste Recommendation System(음서제) and the Recommendation System of the “Hermits(유일)”. They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문과) finishing duties of Saji.

The Saji consist of 6 people in each age term 35~49years, fifties and sixties to seventies fifties who were selected by the recommendation system.

Their serving period as Saji was unknown but supposdley it lasted just for a few months, but the rule defined 30 months. It is assumed that the decline of official of Saji system was caused by the short lasting time of serving.

The previous occupations of most Saji was the 6th Rank Official like a chief magistrate of a district(현감). It was 58.3%. Some were promoted directly from 9th rank of official. The post occupation of Saji was also the 6th rank of official served outside the capital and there was a case get promotion to the top official(당상관).

Key words: Jojiseo, officialism of Jojiseo, Saji

1. 서론

조지서는 조선시대 제지사업을 관장한 중6품 아문이다. 당시 종이는 지전인 楮貨를 찍어내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사대문서를 작성하고 서책을 출판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이므로 이를 제조하고 관리하는 곳이 필요하였다. 조선초 조지서는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그 역할이 매우 컸으리라 생각된다. 조지서에 司紙가 전임관으로 설치된 이후 사지의 책임도 따라서 막중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사지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출판문화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지서의 지위 등의 이해에도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거의 찾을 수 없다. 연구가 부진한 이유로는 사지 책임자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정확해서 정보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사지에 관한 연구는 필자가 조지서의 직제에 대하여 쓴 논문¹⁾ 있으나 전체 조지서의 직제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로서, 사지에 관한 것은 일부분이며 소략하다.

본고는 조지서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의 하나로서, 조지서 관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지에 관하여 사지 책임자를 파악하고 그의 재임 시기, 과거 급제여부, 제수 연령과 재임기간, 그리고 관력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사지의 존재시기와 사지의 지위, 그리고 당시 조지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지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고, 각 기록마다 차이가 무척 컸으므로 그 실태를 자세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다.

1) 정선영, “조지서의 관제와 관원,” 『書誌學研究』 50(2011. 12), 89-111.

2. 사지의 직제 설치와 효과

造紙署는 태종 15년(1415)에 造紙所로 설치되었다. 당시 紙錢인 楮貨紙를 각 도에서 만드는데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것을 선호하여 문제가 많으므로 한 곳에서 만들어 이를 통일하고자 하여 설치한²⁾ 것이었다.

조지서는 1415년에 정식으로 설치되었지만 1412년에 한성에 있는 한 공장을 정하여 저화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³⁾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곳에서 조지서의 설치 목적인 표준적인 두께의 저화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는 아마도 기왕에 있었던 제지공장 가운데 한 곳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해 11월에는 “경기지역에 별도로 조지소를 설치하고, 司贍寺의 직원 1인으로 하여금 저화지를 균일하게 만들도록 감시하자는 청에 의논토록 하였다.”⁴⁾ 관리를 두어 저화지의 두께에 대하여 감시함으로써 각도에서 납부하는 저화지의 두께의 厚薄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을 끊고자 하였는데 조지서의 실질적 관리·감독은 호조의 사섬사의 관리가 담당하였을 것이다. 본래 저화의 제조를 담당하는 곳이 사섬시였으며 조지서의 처음 설치의 주요 이유가 저화지의 균일화와 표준화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조지서의 설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태종 15년에 정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치는 경중이었다고 생각되며, 초기 제지에 대한 관리 역시 사섬사에서 담당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세종년간에는 동왕 2년(1420)에 장의사동에 건물을 마련하고⁵⁾ 事大紙, 表箋紙, 奏啓紙, 咨文紙 등까지 만들어 전주와 남원의 공폐까지 없애는 등 조지서의 역할이 다양해졌지만⁶⁾ 관직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조지서를 호조에 예속시킴⁷⁾으로써 조지서의 목적이 紙貢物의 표준화와 원활한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점차 새로운

2) 『太宗實錄』卷30 15年 7月 25日 庚申.

3) 『太宗實錄』卷23 12年 2月 15日 庚午. “市井之人 但知用厚紙 願於京中一處做得 從之.”

4) 『太宗實錄』卷24 12年 11月 28日 己酉. “且楮貨之 紙各道分造以納 故其厚薄不同 揀擇之弊 易由此而生 乞於京畿別置造紙所 令司贍一員監之 使均厚薄 命下政府義之.”

5) 『世宗實錄地理志』漢城府 造紙所.

6) 정선영, “조지서의 관제와 관원,” 『書誌學研究』 50(2011. 12), 92-93.

7) 『世宗實錄』卷51 13年 3月 8日 壬申.

원료의 종이를 시험 조지하고,⁸⁾ 국가에서 필요한 종이를 각 도와 함께 분정하여 만들기도 하는 등 점차 종이 제조기술과 규격 통일화의 지도적인 역할을 시작하였으므로 조지서의 전담관리가 필요하였다.

조지서 관리에 대한 기록은 세종 13년(1431)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해 提擧를 증설하고⁹⁾ 提調를 설치하였다고 하니 1431년 이전에는 조지서 관리로 제거가 1명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즉 세종 13년 1월 20일 이후에는 제조 1인, 제거 2인, 세종 23년(1441)에는 별좌 1인, 28년에는 별좌 2인을 두어¹⁰⁾ 조지소를 관리하였다.

사지가 설치된 시기는 조지소를 造紙署로 개칭한 세조 12년(1466) 1월로서, 조지서의 관직을 모두 폐하고 종6품의 사지를 1명 두었다.¹¹⁾ 당시 녹관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예종 즉위년에 조지서의 제조가 “조지서가 별좌만 8명이 있고, 久任이 없어서 일이 안되니 祿官 1인을 두어 행수를 삼고 근무일수가 30삭이 되어야 체임할 수 있도록 하기를” 건의하고¹²⁾ 있다. 세조가 사지를 둔지 2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다. 여기의 행수는 사지로서, 세조가 사지를 임명하였지만 당시에는 무녹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년 전 모두 없었다고 한 관직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면 실제 관직의 체계도 느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經國大典』에 보면 사지 1인 외에 제조가 2명, 별제가 4인으로 무녹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지 1인만으로는 조지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종년간에 없었던 별제를 다시 설치한 것 같다.

연산군 12년(1506)에는 사지를 혁파하고 무녹관을 1명 증원하였지만¹³⁾ 중종초에 사지를 새로이 임명하였다. 다시 설치된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중종 8년(1513)에 조지서 사지 韓世琛이 ‘狂妄해서 朝任이 맞지 않는다’는 이조

8) 『世宗實錄』 卷25 6年 8月 2日 甲辰.

9) 『世宗實錄』 卷51 13年 1月 23日 乙酉. “吏曹啓 造紙所官吏事煩任重 請加設提擧一人 每於交代之際 解由傳掌 兼設提調一員 俾專考察 從之.”

10) 『世宗實錄』 卷112 28年 5月 7日 甲戌.

11) 『世祖實錄』 卷38 12年 1月 15日 戊午.

12) 『睿宗實錄』 卷1 卽位年 9月 23日 己卯.

13) 『燕山君日記』 卷61 12年 1月 6日 丙戌.

의 청에 의해 파직된 기록이¹⁴⁾ 있음을 보아 늦어도 1513년 8월 이전에 다시 설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조 22년(1746)에 출판된 『續大典』에 보면 조지서의 관리는 제조 1인과 별제 2인이 정원이며, 사지는 기록에 없다. 『大典通編』과 『大典會通』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속대전』에서 빠진¹⁵⁾ 상태로 즉 1746년 이후에는 다시는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續大典』의 내용은 출판할 당시 이미 얼마간의 시기 동안 사지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전에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세조부터 선조 23년(1594)경까지의 기록이 있을 뿐 이후의 사지 제수자는 보이지 않는다. 17세기초 이후 사지는 제수하지 않고 제조, 별좌, 그리고 별제 등 무늬관원이 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지는 세조말과 연산군년간의 몇 년 동안은 제외하고 조선시대에 약 150년 가량 존재하였다. 사지가 조지서의 실질적인 행수가 된 시기는 실제 제수된 관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15세기 중반부터 선조년간, 혹은 16세기 말, 박여룡이 마지막 현감을 제수받기¹⁶⁾ 이전으로 볼 수 있겠다.

사지의 정원은 기본으로 1명이었으나 중종년간에 잠시 2명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으며, 명종년간에는 일시적으로 4명이 임명되었으나 특별한 예이고, 규정상의 정원은 여전히 1인이다.

다음은 현재까지 파악된 사지 제수자 명단이다. 필자가 쓴 이전의 논문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¹⁷⁾ 또 제수연령은 실제로는 제수, 파직, 체임연령일 수 있다.

14) 『中宗實錄』卷19 8年 11月 4日 戊申.

15) 『大典會通』卷1. “司紙 從六品 (原)一員 (續)減.”

16) 朴弘中의 秋山先生文集에 墓誌가 1편 ‘叔父司紙公墓版’이 있어서 그가 숙부 박여룡에 대해 쓴 것인데 그가 공신이 되기 전 현감에 제수된 시기가 1594년이므로 늦어도 16세기초 이전에 사지를 제수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7) 정선영, “조지서의 관제와 관원,” 『書誌學研究』 50(2011. 12), 101-105. 오류가 있기도 하고 이후 문헌조사에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다.

<표 1> 사지 제수자

번호	재임년도 (연령)	이름	생몰년	문헌	비고 (X부임여부)
1	1466 (?) (39)	楊子瞻 ¹⁸⁾	1428~1498	『南原楊氏大同譜』 上	
2	1492 이전	許珥	(?)~(?)	『國朝人物志』 許磐	
3	1493(72)	李文植	1422~1495	『成宗實錄』 273 24 1 8 갑술	
4	1498이전 (42이전)	南忻	1451~1492	『國朝人物考』 中 南忻	
5	1509(52)	柳公佐	1458~1514	『慕齋集』 卷14 故承訓郎造紙署司紙柳公墓誌	X
6	1516(53)	金璣	1464~1527	『記文上』 贈在參贊金璣神道碑文, 『程里考』 科宦	
7	1513	韓世琛	(?)~(?)	『中宗實錄』 19 8 11 4 무진	파직
8	1510	李承孫	(?)~(?)	『慕齋集』 卷5 題李司紙承孫雙障	
9	1500 후반 이전	宋世曾	(?)~(?)	『月汀集』 題宋判府事文-贊	
10	1515(34)	趙光祖	1482~1519	『中宗實錄』 22 10 6 8 계해	
11	1516	李海	(?)~1531	『中宗實錄』 27 11 12 27 계유	
12	1518(35)	李延慶	1484~1548	『廣州李氏廣州府院君派譜』	
13	1518(46)	鄭浣	1473~1521	『中宗實錄』 33 13 5 27 을축	
14	1521	李璣	(?)~(?)	『中宗實錄』 41 16 3 21 계유	
15	1539(50)	愼弘祚	1490~1551	『中宗實錄』 92 34 10 29 계사, 『湖陰雜稿』 有名朝鮮國通訓大夫楊根郡守愼君墓碣名一并序	
16	1553(50)	李希顔	1504~1559	『陝川李氏世稿』 卷4	
17	1560(68)	成守琛	1493~1564	『明宗實錄』 26 15 7 13 정축	X
18	1560(60)	曹植	1501~1572	『明宗實錄』 26 15 7 3 정묘	X
19	1566(70)	成運	1497~1579	『明宗實錄』 33 21 9 10 정유	X
20	1566(50대)	韓脩 ¹⁹⁾	1512(?)~ 1588	『明宗實錄』 33 21 9 12 기해	
21	1566(68)	李恒	1499~1576	『明宗實錄』 33 21 9 12 기해	
22	1566	南彥經	(?)~(?)	『明宗實錄』 33 21 9 12 기해	
23	1566(67)	林薰	1500~1584	『明宗實錄』 33 21 9 12 기해	
24	1575(52)	趙穆	1524~1606	『宣祖實錄』 9 8 7 24 신묘	X
25	1578	趙慶雲	(?)~(?)	『宣祖實錄』 12 11 4 17 무술	파직
26	1581~1594 년간(41~53)	朴汝龍	1541~1611	『秋山先生文集』 叔父司紙公墓版, 行狀	

18) 양자첨의 사지제수년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남원양씨대동보에는 1462년 경기전직, 그리고 년도 표기 없이 사지를 거쳤다는 기록이 있어 1462년으로 생각하게 한다. 초기의 사지였음은

3. 사지의 출사로와 재임기간

조선시대에서는 모든 관원이 시험을 통해서만 관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과거 가운데서 문과가 가장 위상이 높았으며 문과 급제자 중에도 등수에 따라 제수되는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있었다. 문과에 급제한 경우에도 급제 당시 관직이나 관품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제수되는 관직과 품계가 달랐다. 문음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取才를 거쳐야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지의 경우에는 초직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급제는 사지로 승진을 하거나, 이미 사지에 있을 경우 체직 후의 승진과 관계가 있었다.

3.1 과거 급제

문과급제자는 승진이 적체되어 대기직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참서관직에 제수되기도 하였는데²⁰⁾ 사지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지체직 이후에 급제한 경우라서 직전의 관직이 아니라 후임에 영향을 주었다.

현재 파악된 사지 26명 가운데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조광조를 제외하고 모두 사지 거관 후에 급제한 경우다. 重試에 급제한 김기도 있다. 증시에 급제할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적어도 1, 2품계 승진해야 하는데 김기의 경우 승진을 크게 하지 못하였다. 『程里考』에 우의정 成世昌이 쓴 그의 비문이 있는데 과거에 불지 못했다고²¹⁾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에 보면 1525년에 문과, 1536년에 증시에 불어 여산군수에 이르렀다고²²⁾ 한 기록도 있다. 증시에 급제할 경우 당상관에 승진한 경우가 66%에 이른다²³⁾ 하는데 군수가 아니었을

확실하다.

19) 한수의 경우 기록이 매우 부정확하여 『南溪集』의 발, 그의 『석봉유고』의 행장에 년77로 즐했다는 기록, 『明宗實錄』 卷33 21年 8月 4日의 사직소에 50이 넘었다는 것 등과 제수년도를 계산하여 추정하였다.

20) 차미희, “16세기 文科及第者의 初職 규정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2002), 83-85.

21) 『程里考』 記文上 贈左參贊金璣神道碑文. “累舉不中第.”

22) 『程里考』 科宦. “乙酉登第 丙申重試 官至礪山郡守.”

경우는 미리 지방관에 연루되어 과직당한 일이²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록에 차이가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마시의 경우 대부분이 급제하였으며, 장원을 한 사람이 2명이 있었다. 조광조는 1510년에 진사시에서 장원을 하였고, 한수는 1532년의 생원시에서 장원을 하였다. 조광조의 경우에는 진사급제 후 성균관 유학이었지만 장원으로 급제하였기 때문에 학행천거로 사지가 되었다. 조광조는 사지 임기중에 문과 진시에 급제하였다. 한수의 경우는 장원 후 별좌를 제수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병이 있어 이후 과거를 보지 않았다고²⁵⁾ 한다.

사마시와 문과에 합격한 경우가 2명이며, 사마시와 현량과를 합격한 경우는 2명, 현량과만 합격한 경우가 1명이었다. 성운과 박여룡은 생원과 진사에 함께 합격하였다.

또 능력은 있음에도 사마시에도 급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항과 유공좌이다. 그러나 사지가 되기 전에 이미 종6품직에 제수되었다. 조식은 전혀 과거에 연연하지 않은 경우이며, 성수침의 경우도 조광조의 문인으로서 현량과에 천거되었으나 기묘사화로 포기하였다. 나머지 8명은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이다. 최고위 관직은 문과 급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과거급제와 출사로

번호	이름	사마시(급제년도)	문과(급제년도)	문음 유일	최고위관직
1	楊子瞻	사마시(1456)		문음	
2	許 珮				
3	李文植				
4	金 璣	진사(1516)	문과(1516), 문과중시(1536)	문음	여산군수(종4)
5	南 忻			문음	

23)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중시 급제자 연구,” 『실학사상연구』 39(2009), 128.

24) 『中宗實錄』 卷81 31年 5月 18日 壬申에는 과직한 기록이 있지만, 동실록 卷88 33年 9月 26日 丙申에 보면 서용했다.

25) 『明宗實錄』 卷33 21年 9月 12日 己亥.

번호	이름	사마시(급제년도)	문과(급제년도)	문음 유일	최고위관직
6	李承孫				
7	韓世琛				
8	柳公佐			문음	
9	宋世曾			문음	
10	趙光祖	생원, 진사(1510)	문과(1515)	성균관천거	대사헌(중2)
11	李海		현량과(1519)	무반	창성부사(중3)
12	李延慶	생원(1507)	현량과(1519)	원사자손	홍문관교리(정5)
13	鄭浣	사마(1507)	현량과(1519)	학행	이조정랑(정5)
14	李璣				
15	愼弘祖			문음	
16	李希顔	진사(1513)		유일	
17	成守琛		현량과 1519 천거 (포기)	유일	
18	曹植			유일(經明行修)	
19	成運	생원·진사(1531)		유일(經明行修)	
20	韓脩	생원(1532) 장원		유일(經明行修)	
21	李恒			유일(經明行修)	
22	南彥經	생원(1546)		유일(經明行修)	
23	林薰	생원(1540)		유일(經明行修)	
24	趙穆	생원(1552)		유일(經明行修)	
25	趙慶雲				
26	朴汝龍	생원, 진사(1573)		문음	

문과급제자의 가장 최고위직을 조사해 보면 김기-여산군수(중4), 조광조-대사헌(중2), 이해-창성부사(중3), 이연경-홍문관교리(정5), 정완-이조정랑(정5)을 역임하여 청요직이 50%, 당상관이 25%였을 정도로 인품이나 학품이 매우 훌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2 제수 연령

사지에 제수된 연령을 분석해 보았다. 사지가 종6품 참서관으로서 대부분은

관력이 있어야 하므로 30대 이후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종종 후반기 이후 경학에 밝고 행실이 밝은(經明行修)와 老成을 천거 받고, 심지어 6조를 갖춘 이를 찾아 제수하는 경우가²⁶⁾ 있었으므로 연령차이가 크다. 따라서 제수받은 연령 자체는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당시 왕의 사지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명종년간에 6조를 갖춘 사람으로 천거된 사람이 조식, 이항, 성운, 남언경, 한수, 김범이다. 김범을 제외한 이들에게 모두 사지가 제수되었다. 즉 사지는 유일로서, 6조 -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간언을 따르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간사한 자를 멀리하며, 백성을 잘 돌보고, 신중하게 상을 줄 것 등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하는 직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이는 사지라는 직책이 점차 실무에서 멀어지는 관직이 되어 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6세기 말 사지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사지에 제수된 연령이 가장 적은 이가 조광조로서 34세였으며, 가장 많은 이가 72세인 이문식이였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지는 35세에서 49세였던 반면, 후반기에는 나이가 적은 경우가 조식으로서 60세였다. 유일 천거에 6조를 갖춘 이를 찾은 것으로 실직으로 녹관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30대는 3명, 40대 3명 합이 6명이며, 50대가 가장 많아서 6명, 유일로 천거된 60,70대는 각각 4명, 2명이다.

3.3 재임 기간

언제 사지에 제수되고 체직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 따라서 분석하기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 당시 사지가 관직 가운데 갖는 위치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되리라 생각한다. 사지의 직무가 얼마나 충실히 시행되었는지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6) 『明宗實錄』 卷24 13年 5月 18日 乙丑. 6조목은 '勤學, 從諫, 親賢, 遠佞, 恤民, 慎償'이다.
『明宗實錄』 卷32 21年 5月 23日 癸丑.

현재 정확하게 사지의 재직 기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조광조 뿐이다. 조광조는 중종 10년(1515) 6월 6일 사지에 제수되었고,²⁷⁾ 그해 10년 8월 29일 成均館典籍 이되었으니²⁸⁾ 2개월 22일 동안 사지직에 있었다. 조광조는 사지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문과에 응시하였고 급제되어 바로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당시 문과에 급제되어 갈 수 있는 곳 3관 가운데 하나가 성균관이었고 전적이 부족하였기 때문에²⁹⁾ 바로 전적으로 승진하였던 것이라 생각되지만, 짧은 재임기간이 그만큼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문식은 狂妄한데 감찰에 제수되었으므로 개정하고 국문하기를 청한 세종 24년(1493) 1월 4일의 기록³⁰⁾이 있다. 이에 대해 매일 토론한 기록이 있는데 1월 8일의 기록에 보면 이조에서 “그가 광망하면 선전관을 끝내고 어떻게 司紙로 갈 수가 있었겠는가. 사지와 감찰은 관직의 순서가 맞기 때문”³¹⁾이라고 아뢴 기록이 있다. 감찰이 제수된 1월 4일 경 이전에는 사지였으며, 1월 11일에는 감찰을 개정하였으니³²⁾ 비록 사지는 아니지만 관직의 재임기간이 당시 무척 짧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밖의 사람들은 제수된 날짜, 파직된 날짜, 체직된 날짜 등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재직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세종년간에 제조의 경우 久任이 없어서 30개월이 차야 이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세종 13년(1431)에 조지서에 제조를 두어 사무를 보도록 한 것을 보면 행수의 경우 30개월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³⁾ 제거의 경우는 1년³⁴⁾이 기본이었으며, 별제의 경우 자리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지만 5, 60개월을 기다렸으며, 14개월 만에

27) 『中宗實錄』 卷22 10年 6月 8日 癸亥.

28) 『中宗實錄』 卷22 10年 8月 29日 癸未.

29) 차미희, “16세기 文科及第者의 初職 규정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2002), 89.

30) 『成宗實錄』 卷273 24年 1月 4日 庚午.

31) 『成宗實錄』 卷273 24年 1月 8日 甲戌. “吏曹來啓曰 李文植若果爲 狂妄 則安能宣傳官去官 爲司紙乎 以司紙與監察職次相當 故擬望.”

32) 『成宗實錄』 卷273 24年 1月 11日 丁丑.

33) 정선영, “조지서의 관제와 관리,” 『서지학연구』 50(2011. 12), 98.

34) 정선영, “조지서의 관제와 관리,” 『서지학연구』 50(2011. 12), 100.

체직된 것에 대하여 국문을 요청³⁵⁾하기도 하였다.

또 예종즉위년에 조지서에 녹관을 두고 행수로 삼으면서 ‘30삭이 차야 체임하도록’³⁶⁾ 한 것을 보면 사지 본래의 임기는 30개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적어도 조지서에서는 30개월 정도 근무해야만 소임을 할 수 있는데 사지의 임기가 매우 짧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렵지만 위의 예를 보면 다른 이의 경우도 그 기간에 사뭇 못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명종년간에도 한꺼번에 한수, 이항, 남언경, 임훈 등 4명을 제수했으며, 심지어 성운도 같은 해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후기에는 겨우 2~3개월 동안 재임한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문신의 경우 승진이 매우 힘든 상태였지만 문음의 경우 오히려 쉽게 실직에 제수되었는데³⁷⁾ 사지의 경우 문음이 승진하기에 좋은 관직이었으므로 오히려 재임기간이 짧아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중종년간에 이르면 조지서의 사지는 30삭을 근무하는 조지서의 책임자가 아니라 참봉정도의 관직에서 승진하는데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 간 느낌이다. 그러므로 사지를 파하고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는 별제를 중심으로 실제업무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사지에 제수되었으나 전혀 부임하지 않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 유공좌, 성수침, 조식, 성운, 조목 등이 그들인데 유공좌를 제외하고 사지만 부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후 관직에 부임하지 않았다.

3.4 서원 배향

사지는 대부분 과거에 급제했을 뿐 아니라 매우 경전에 밝고, 효행이나 학행이 뛰어난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서원에 배향된 사람이 많다. 총 26명 가운데 서원에 배향된 사람이 9명으로 약 34.6% 가량 된다. 이 가운데 조광조, 조식은 3곳의 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성수침과 조목은 2곳의 서원에 배향되었다.

35) 정선영, “조지서의 관계와 관리,” 『서지학연구』 50(2011. 12), 106.

36) 『睿宗實錄』卷1 卽位年 9月 23日 己卯.

37) 차미희, “16세기 文科及第者의 初職 규정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2002), 90.

<표 3> 서원에 배향된 사지

번호	이름	배향사
1	조광조	죽수서원, 양현사, 심곡서원
2	이연경	팔봉서원
3	성수침	과산서원, 세덕사
4	조 식	덕천서원, 신산서원, 용암서원
5	이 향	남고서원
6	남언경	미원서원
7	임 훈	용문서원
8	조 식	도산서원, 향덕사
9	박여룡	방현서원

4. 사지의 관력

사지의 官歷에 대한 분석은 사지의 지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지 직전의 관직과 사지 체임 관직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바로 직전과 직후의 관직을 중심으로 하였다. 실제로 부임하지 않았다 해도 그 경향을 알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사실상 직전과 직후의 관직도 정확치 않은 부분이 많으나 경향을 아는 데는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가능한 한 여러 자료를 비교하였다.

조선시대 문관의 관직 제수는 크게 문과급제와 유일 천거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문과는 갑과가 가장 우위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등수에 따라서 관품, 관직에 차이가 있었다. 사지의 경우 문과급제 후 우선적으로 제수되는 곳이 아니어서 학행, 효행, 경전에 조예가 깊거나 행실이나 소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을 때, 성균관의 천거, 혹은 유일 등으로 제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지가 되기 전에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사람이 많지 않다. 다음 <표 4>는 사지가 되기 직전과 직후에 제수받은 관직과 관품을 정리하였다.

<표 4> 사지의 관력

번호	이름	전직(관품)	체직(관품)
1	楊子瞻	경기전직(종9)	임피현령(종5)
2	許 珣	미상	미상
3	李文植	선전관(~9)종	감찰(정6)
4	南 忻	한성부참군(정7)	의금부경력(종4)
5	李承孫	미상	미상
6	韓世琛	미상	미상
7	柳公佐	예빈사주부(종6)	사산감역관(정7)
8	宋世曾	미상	미상
9	趙光祖	성균관유학	성균관전직(정6)
10	李 海	보령현감(종6)	평안도우후(종3)
11	李延慶	선릉참봉(종9)	사헌부지평(정5)
12	鄭 浣	사축(종6)	공조정랑(정5)
13	金 璣	통례원인의(종6)	예산현감(종6)
14	李 璣	수령(종6~종5)	
15	愼弘祖	내섬사주부(종6)	칠원현감(종6)
16	李希顔	고령현감(종6)	군자감판관(종5)
17	成守琛	적성현감(종6)	
18	曹 植	단성현감((종6,X)	
19	成 運	참봉(종9)	
20	韓 脩	장원(정6)	사헌부지평(정5)
21	李 恒	사축(종6)	
22	南彦經	지평현감(종6)	양주목사(정3)
23	林 薰	인양현감(종6)	군자감주부(종6X)
24	趙 穆	중부사주부(종6X)	공조좌랑(종6X)
25	趙慶雲	미상	미상
26	朴汝龍	후릉참봉(종9) 사옹원직장(종7)	현감(종6)

(X는 부임않음)

4.1 직전 관직

사지가 종6품이므로 대개는 그보다 낮은 관품에서 승진하거나, 혹은 같은 품계로 있다가 수평이동을 하는平敍의 경우도 많았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좌천의 경우도 없지 않았다.

현재 파악된 총 26명 가운데 사지가 되기 전 가장 많았던 관품이 종6품으로 李璘까지 합하여 모두 13명으로 50%며, 6품은 총 53.8%이다. 다음은 종9품으로서 이문식까지 포함하여 5명이며 약 19.2%, 그리고 전직없이 初職으로 종6품 사지에 제수된 사람이 1명, 전혀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5명이다.

초직인 경우는 趙光祖가 있는데 조광조의 경우는 성균관에서 경서에 밝고 행실이 좋다고 천거하여 사지가 된 경우이다. 이때도 초직에 6품직은 과하다는 논의가 있었다.³⁸⁾ 당시 영사였던 정광필은 초직에 6품은 과하며, 과거에 급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6품의 경우는 갑과의 일등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광조는 1515년 식년사에서 진사 장원을 하였으므로 큰 물의가 없었다.

한수의 경우도 생원시에 장원을 하였고 공천으로 5품 별좌를 제수 받았었으나 나가지 않은 경우인데, 문음의 경우 초직으로 참봉뿐 아니라 별좌까지 확대되었던³⁹⁾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일에게는 먼저 관품을 주고 이어서 관직을, 그리고 다음으로 사지를 제수하는 경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사지의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명종은 “經明, 行修하고 老成, 純正한” 사람을 천거하도록 이조에 명하여 한수, 이항, 남언경, 임훈 등과 성운, 김범 등을 함께 불러 治亂, 治國, 學問의 도, 선행 등에 대하여 진언을 듣고, 모두에게 6품을 주었다.⁴⁰⁾ 2, 3개월 후인 그해 9월에 앞의 4명 모두 사지에 임명하였다.⁴¹⁾ 한수나 임훈의 경우 6월 2일 6품을 받았고, 8월 2일에 각각 掌苑과 언양현감으로 처음 제수되었으며,⁴²⁾ 9월 12일 경에 사지를 제수받았으므로 약 1개월 동안 전직에 있었는데 실제 부임했는지 알 수 없다.

38) 『明宗實錄』 卷33 21年 9月 12日 己亥.

39) 차미희, “16세기 전반기 문과 급제자의 6품직 승진,” 『조선시대사학보』 20(2002), 91.

40) 『明宗實錄』 卷33 21年 6月 21日 庚辰.

41) 『明宗實錄』 卷33 21年 9月 12日 己亥.

42) 『明宗實錄』 卷33 21年 8月 2日 庚申.

사지를 제수 받기 전에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사지직에 부임하지 않은 경우도 총 5명이 파악된다.

이를 다시 관직명으로 표시해 보면 전직의 경우 현감이나 현령이 가장 많았다. 당시 문과급제자의 경우 7품에서 9품까지의 관품을 받고 權知라고 하는 일종의 임시 대기직을 받았던⁴³⁾ 상황이었고, 그 해결책으로 마련된 여러가지 규정도 있었다. 인사적체가 심했던 시기에 동일 관품으로 거관하는 것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음출신이 6품직으로 승진할 경우 제수된 것이 사지였다.⁴⁴⁾ 동일한 관품으로 平敍한 것은 근무일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고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사지가 實職이었으므로 제수된 경우도 있겠다. 특히 관품과 관직이 일치하지 않았던 시기⁴⁵⁾이었으므로 단지 관직을 보고 어떤 형태로 거관했는지를 단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참봉에서 사지로 승진한 사람이 4명이다. 문음출신들이 초직의 경우 대부분 종9품인 참봉에 제수되었는데 참봉 역임 후에 6품직으로 승진하는 경우 사지에 많이 제수되었다는 것을⁴⁶⁾ 알 수 있게 한다. 門蔭 종9품에서 종6품으로 승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운, 남언경, 임훈 등도 사지로 제수된 1566년 참봉을 제수받았으나 6품 관품을 먼저 주었으며⁴⁷⁾ 이 후 현감 등에 제수되었고 곧 바로 사지가 되었다. 남언경의 경우 실제 지평에서 현감의 책무를 수행하였지만 현감에 있었던 기간은 2개월 반 정도였다. 이항, 한수, 남언경, 임훈 등 4명이 함께 사지직을 제수 받은 후 언제 체직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박여룡의 경우도 정확치 않은데 음서로 참봉부터 시작했으나 공을 세워 사용원직장, 사포서사포, 청양현감 등을 역임하였는데 정확하게 전직과 후직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밖에 무관직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이문식, 유공좌, 남훈, 신흥조는 본래 무관이나 동반직에서도 자리가 부족할 때는 서반직에 제수하는⁴⁸⁾ 경우가 있었다.

43) 차미희, “16세기 전반기 문과 급제자의 6품직 승진,” 『조선시대사학보』 20(2002), 83.

44) 차미희, “16세기 전반기 문과 급제자의 6품직 승진,” 『조선시대사학보』 20(2002), 91.

45)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2007), 18.

46) 차미희, “16세기 전반기 문과 급제자의 6품직 승진,” 『조선시대사학보』 20(2002), 86.

47) 『明宗實錄』 卷33 21年 6月 21日 庚辰.

신홍조는 무과 정시에 급제하였다. 이들은 사지직이 반드시 문신이어야 하는 관직이 아닌 까닭에 문음으로써 서반직에서 사지에 제수된 것으로 보인다.

4.2 체직후 관직

사지를 체직한 후에 제수된 관직을 살펴보면 거관 관직의 경우 사지에서 승진하는 관직과 관품이 어찌지를 알 수 있으므로 사지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사지 체직 후 바로 제수 받은 관직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지가 종6품 실직이므로 체직후 대부분 품계가 높아지거나 같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지역임자의 체직후 제수직을 조사한 결과 종6품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칠원현감으로 거관한 愼弘祚의 경우 사간원에서 政體에 방해된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사지에서 현감으로 가는 것은 상례⁴⁹⁾라 하는 것을 보면 거관 현감이 많은 것이 이해된다. 문과급제자가 적체되어 외관직이나 서반직도 제수하였으며, 당상관직으로 승진할 경우, 외관직을 꼭 거쳐야⁵⁰⁾ 하므로 현감에 제수된 예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임보다 후임은 실직을 거친 후여서인지 승진을 한 경우가 많아서 다양하게 관품이 분포하고 있다. 정7품 1명, 정6품 2명, 종5품 2명, 정5품 2명, 종4품 1명, 종3품 1명, 정3품 1명이었다.

유공좌의 경우는 사지를 제수받았는데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사산감역관을 제수하였던 것이다. 관품만으로 본다면 좌천이지만 다음에는 정6품인 용양위 사과를 제수받았다.

조광조의 예를 보면 종6품 사지 재임 중에 문과를 급제한 후 정6품 成均館典籍

48)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2007), 20.

49) 『中宗實錄』 卷92 34年 10月 29日 癸巳. “用人甚重 … 而愼弘祚特除漆原縣監 以司紙爲縣監自是常例 但親政非常之事 中外顯望 而特命乃及於縣監 非是欲遞 恐妨正體 故啓之 答曰 司紙愼弘祚前政 亦擬縣令望者 故議于銓曹答言 此人已經守令爲之 可當 故特除耳 非獨斷而爲之也.”

50)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2007), 20.; 한충희, “朝鮮初期 官職構造研究,” 『大邱史學』 75(2004), 34.

으로 제수되었는데 천거로 사지에 제수되었지만 이미 관직에 있었고 당시 전적의 부족이 자심했으므로 3관직에 제수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광조는 성균관전적에서 거의 3개월 만에 관품은 같지만 청요직인 사관원 정언으로 그 직위가 높아졌으며 초고속으로 대사헌으로 승진하였다.

조목의 경우 사지에 부임하지 않았으나 다음에 제수받은 것이 공조좌랑으로서 정6품이다. 이것도 부임하지는 않았다. 남언경의 경우 1573년 정3품 양주목사로 제수되었는데⁵¹⁾ 학행이 높았으며,⁵²⁾ 사지로 제수된 이후 7년 정도 지냈으므로 제수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이연경과 정원의 경우 정5품으로 승진하였는데 현량과에 급제하였으므로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 탁용되어 승진이 빨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연경의 경우 거족이며, 대표적인 훈구가문으로서⁵³⁾ 청요직에 승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희안의 경우는 군자감판관이 되었으므로 종5품인데 훈구가문으로서 문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의 경우는 무인으로서 성을 버리고 도망쳐 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지에서 체직하여야 한다는 이조의 요청이 있었으나 후에 공을 세웠기 때문인지 직을 지켰고 후에 종3품 무반직에 제수되었다.

5. 결 론

사지는 조선조 제지업을 관장하고 관리 감독하였던 조지서의 행수관리였다. 세조 12년(1466)에 관제 개혁과 함께 처음 설치되어 약 150년 가량 존재했던 종6품의 관직이다. 본고는 그동안 사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사지 염임자와 관력, 제수년도, 연령, 제수 기간, 배향서원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51) 『宣祖實錄』卷7 6年 8月 27日 甲戌.

52) 『明宗實錄』卷33 21年 6月 21日 庚辰에 보면 유일로 6품을 줄때 “가장 어리지만 뛰어난다”는 기록이 있다.

53) 李秉然, “賢良科 及第者의 性分,” 『大邱史學』 12·13(1977), 7, 207.

현재 파악된 사지 역임자는 총 26명이다. 첫번째 제수자는 양자첨으로서 1466년경에 제수되었으며, 마지막 제수자는 박여룡으로서 1594년 경 이전에 제수되었다. 영조년간에 출판된 법전 『續大典』부터 사지의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도적으로는 18세기 이후에 사지가 혁파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16세기말부터 제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제수자 가운데 문과급제자는 총 5명이며 중시 합격자도 있다. 조광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지는 사지를 체직된 후에 급제했다. 따라서 과거 급제자 문신으로 사지에 제수된 것은 아니고 문음, 유일 등의 천거로 관직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진사와 생원시는 거의 대부분이 급제하였다.

제수자의 연령대는 30대 3명, 40대 3명, 50대 6명, 60,70대는 각 4명, 2명으로 후기에는 유일로 老成 추천이 많았으므로 3,40대, 50, 6,70대로 나누어 보면 6명으로 동일하다.

재임기간은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짧지 않았나 추정된다. 행수의 신분과 일의 연속성측면에서 본다면 규정과 같이 적어도 30삭이 되어야하나 불과 몇 개월 밖에 재임하지 않은 듯하다.

사지제수자의 관력은 전직의 경우는 6품관인 현감이 가장 많아서 53.8%를 점한다. 종9품인 참봉이 그 뒤를 이었으므로 평서, 그리고 초직에서 바로 사지로 승진한 사례가 많았다.

체직후의 관직 역시 6품 현감·현령이 가장 많았으며, 정3품까지 있었다. 최고직의 경우는 관품은 높지 않지만 청요직에 진출한 사람이 3명이 있었으며, 당상관직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

사지의 경우 조선시대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갖는 조지서의 최고 관직이었다. 문신이 출사하는 지위가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문음으로서 승진에 중요한 자리였으며 참서관으로 윤대하는 조관이었다. 학행과 경명행수가 되지 않은 경우 제수 받을 수 없는 관직이었으나 반면 이러하기 때문에 잦은 체직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등이 사지가 혁파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國朝人物考」.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 「國朝人物志」. 영인본. 서울: 명문당, 1983.
- 「經國大典」. 영인본. 서울: 경문사, 1981.
- 「大典通編」.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8.
- 「大典會通」.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9.
- 「續大典」. 영인본.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9.
- 「程里考」. [간년미상]. 규장각소장본.
- 「朝鮮王朝實錄」.
- 金安國. 「慕齋集」(한국문집총간 20). 영인본. 서울:民族文化推進黨, 1988
- 朴世采, 「南溪集」(한국문집총간 140). 영인본. 서울:民族文化推進黨, 1988.
- 宋漢植, 鎭川宋氏族譜. 영인본. 서울: 鎭川宋氏大宗親會. 1981.
- 楊孝燮, 南原楊氏大同譜. 전주: 1998.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2007). 5-50.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증시 급제자 연구.” 『실학사상연구』 39(2009). 89-134.
- 尹根壽. 「月汀集」. 1773.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 李秉佺. “賢良科 及第者의 性分 - 賢良科 研究 添補.” 『대구사학』 12·13(1977). 195-222.
- 李塚壽. 「陝川李氏世稿」. [간년미상]. 규장각소장본.
- 鄭士龍. 「湖蔭雜稿」 卷7. 1551. 규장각소장본.
- 정선영. “조지서의 관제와 관리.” 『서지학연구』 50(2011. 12). 89-111.
- 趙 穆. 「月川集」. [간년미상]. 규장각소장본.
- 車美姬. “16세기 文科 及第者의 初職 규정 변화 - 門蔭 출신의 參上官職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03(1999. 12). 151-157.
- 차미희. “16세기 전반기 문과 급제자의 6품직 승진.” 『조선시대사학보』 20(2002).

79-106.

최선희. “조선 전기 유일 친거제의 운영과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56(2011). 5-44.

韓 脩. 『石峯遺稿』. 서울: 學古堂, 1992.

한충희. “朝鮮初期 京職 文官 正1 ~ 從6品職의 官職地位 - 人事制와 官歷을 중심으로.” 『啓明史學』 18(2007. 11). 27-57.

한충희. “朝鮮初期 官職構造研究.” 『大邱史學』 75(2004). 37-64.

한충희. “朝鮮初期 六曹衙門研究 - 官員의 性分 官歷과 官職의 地位를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10(2001). 1-38.

허 찬. 『楊川許氏世稿』. [간년미상]. 전남대학교 소장본.